

## 서울의료원 인사제도 개편 합의서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이하 '의료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서울의료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서울의료원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한다.

1. 「2012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제3호에 따른 고정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이하 '관리감독자')를 제외하며, 관리감독자는 의료원 규정으로 정한다.
2. 의료원의 청원휴가 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를 참고하여 변경하며, 이를 의료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의료원은 임직원에게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의료원장 송관영

송관영

---

서울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 심현정

심현정

---